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목표는 '주민중심'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된다.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지방의회 인사권이 시도지사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간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소개했다.

개정방향은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가 실질화 된다.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했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시·도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에서 200명으로, 시·군·구는 200명에서 150명으로 완화한다. 청구 가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자치단체 자율성·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지방관계,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주민조례발안제·자치분권 평가 도입

(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 다만 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로 유지했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조급, 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출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했다.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대된다.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원 과정은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개선한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의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해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도 강화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와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현행 재량) 한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 등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용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은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가 불가능하다.

중앙과 지방 협력관계를 정립하고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을 향상시킨다.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와 지방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현행	개선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자치 중심 • 주민 권리 제한적 • 조례안 단체장 제출 • 주민감사 청구권 청구가능기간 2년 19세 이상 • 주민투표 실시구역 최소단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 원리 명시 -주민생활에 영향 미치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참여 권리 신설 -조례안 의회 직접 제출 -서명인수 하향조정 -청구가능기간 3년 -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은 18세 이상 -청구대상 확대, 주요결정사항은 모두 포함 명시 -실시구역 제한 폐지 -개표기준 폐지 및 확정요건 도입
실질적 자치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방 사무배분 구속력 미흡 • 사도의회사무처 직원 임용권은 시도지사 권한 • 지방의회 관련 사항 법률에 상세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무배분 기준에 국가자치단체 준수 의무 부과 -임용권 사도의회의회장에 부여 -지방의회 운영, 조례에 위임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화
자치단체 투명성·책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 미규정 • 위법 처분·부작용에 국가 시장이행명령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의회 의정활동 종합적 공개 -국가가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용에 시장이행명령 가능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의법적근거 미규정 • 단체장 인사위원회 근거, 운영기준 등 미규정 • 행정협의회 설립시 지방의회의 의결 • 대도시 인정기준 근거 미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 의장-대통령, 공동부의장-국무총리, 시도지사협의회장 -단체장 인사위 자율 구성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 임기 시작 후 30일 범위내 -지방의회 보고건소화 -대도시 특례 100만 이상 '특례시'로 명명 위임근거 마련

(자료=행정안전부, 그래픽=뉴스시 제곱)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자치발전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와 지방 4대 협의체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행안부 장관이 참여한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

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사무 특례를 확대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경쟁체제 유지를”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촉구... 'GM 군산공장 활용 방안 마련'도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경쟁체제 유지 촉구와 한국GM 군산공장 활용방안 마련과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31일 원주군의회에서 열린 제238차 월례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운행버스 경쟁체제 유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전북권-인천국제공항 간 노선의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대법원 판결로 대한관광

리무진의 독점운영이 계속될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판결이 전북도민들의 교통선택권 제한과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불러 올 것이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대응과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 결정을 촉구한 뒤 정부의 대응적 결단과 현실적인 대책으로 글로벌 기업의 희생양이 된 군산공장에

신산업 투자 등 지역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농민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공공재로서의 중요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기기본소득 또는 농민수당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농민수당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박병술 협의회장은 "지역간 상생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각 정당대표에게 보내고 요구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철 기자

전북도, 내일 도금고 지정 신청 공고

전북도는 금고 약정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 할 금고 지정을 위해 11월 2일 도보와 도 홈페이지에 도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금고는 지난 2015년에 공개경쟁을 통해 일반회계는 제1금고인 농협은행이,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2금고인 전북은행이 맡고 있다.

금고 운영과 관련된 2018년 전라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조 3,897억 원, 특별회계 4,982억 원, 기금 8,976억 원으로 총 6조 7,855억 원에 이른다. 도금고 지정은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며, 금고지정 신청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서 전라북도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추진 일정은 11월7일 금고지정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22부터 11월 29일까지 2일간 금융기관 제안신청서를 접수받아 11월 말 전북도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1순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일반회계)로, 2순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특별회계)로 지정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전북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 5일 군산서 컨퍼런스 개최

전라북도 스포츠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는 행사가 오는 5일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체육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컨퍼런스가 군산대 웰니스홀에서 '전북 스포츠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번 컨퍼런스는 도민과 소통하는 스포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컨퍼런스는 공식행사와 명사 초청, 스포셜 특강, 질의 응답 등으로 구성됐으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이라는 주제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다.

또 최성훈 울산대 교수와 유인택 익산시체육회 국장이 각각 새민금과 스포츠 관광, 익산 전국체전·장애인체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벌인다.

한국체육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에서 운영하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의 현실적 홍보를 통한 도민 모두가 움직이는 서포터즈를 마련하기위해 컨퍼런스를 마련했다"며 "전북 체육 발전을 위한 이야기들이 쏟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우정청, 농특산물 생산자

유통자 대상 전자상거래 설명회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성철)은 지난 30일 국립전주박물관 대강당에서 지역 농특산물 생산자 시, 군 농산물 유통담당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체국 전자상거래 설명회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북우정청은 농어촌 생산농가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2016년부터 오픈마켓에 달걀이장터를 개설, 첫 해 10억원의 농산물 판매, 2017년 50억원, 2018년 9월 현재 107억을 판매, 도내 공공기관 소량물 중 가장 높은 매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온라인 마케팅 트렌드와 판매 전략'을 강의한 ㈜큐광 박민호 매니저는 "우체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산지 사정을 잘 아는 우체국에서 생산자와 협력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개발하면 무방을 비롯, 소량물에서 최근 앞 다투어 추진하는 생산자 산지직송 코너에서 검증된 양질의 상품을 판매한다."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농특산물 온라인판매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생산자, 우체국, 소량물이 상생하는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주매일의 창간 10주년을 축하합니다”

KFSD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사장 오진휴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